

대응지침(제15판) 주요 개정내용

〈 ‘23.2.21. 산업보건기준과〉

구분	변경 전('22.5.3.)	변경 후('23.2.17.)
비상연락체계 구축	○코로나19 증상자(발열 및 호흡기 증상)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보건소·의료기관과 비상 연락체계 구축	○삭제
코로나19 예방접종 동참하기		○(신규)정부가 권고하는 기준에 따라 코로나19 예방접종 참여하기
증상이 있는 종사자의 복무관리	○출퇴근 시간 대중교통 집중 이용에 따른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시차출퇴근제를 활용 ○방역관리자는 구성원들의 발열, 기침 등 호흡기 증상 유무를 확인	○(삭제) 시차출퇴근제 ○(수정) 증상이 있는 종사자는 방역 관리자에게 알리고 집에서 쉬도록 조치 ○(수정) 종사자들이 수시로 임상증상을 확인할 수 있도록 체온계 등 비치
업무공간 및 구내 식당·휴게실 관리	○사무실 책상, 작업대, 구내식당 등은 사람간 최소 1m 거리두기가 가능하도록 배치하거나 칸막이 설치 ○점심시간 시차제 운영 ○휴게실 등을 공용 공간은 혼잡한 시간을 피해 이용 지도 ○밀폐된 흡연실 운영을 자제하고 가급적 실외 흡연실 이용지도 - 흡연실을 이용하는 경우 거리유지, 대화자제, 이용 후 손소독 등 방역 수칙 철저히 준수	○(삭제) 칸막이, 점심시간 시차제, 흡연실 이용 안내 ○(수정) 실내 마스크 미착용 시, 다른 사람과 가능하면 거리 유지(1m 이상)하기 ○(수정) 3밀(밀폐·밀집·밀접) 환경 또는 비말 생성행위(합성·합창·대화 등)가 많은 상황에서는 마스크 착용하기 -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고위험군이거나, 3밀 환경인 경우에는 KF80 이상 보건용 마스크 선택하기 ○(수정) 콜센터와 같이 시설 내 밀집도 완화조성이 어려운 경우 가림막 활용하기 ○(수정)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(인후통, 기침 등)이 있는 경우 구내식당, 휴게실 이용 자제하기
회의·교육	○회의·교육 시 참석자 전원 마스크를 쓰고 발언 시에도 마스크 착용	○(수정) 회의·교육은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에 해당하여 마스크 착용을 강력히 권고
통근버스		○(추가) 통근버스 이용시에는 의무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대화 자제하기
기숙사 관리	○시설 내 유증상자 모니터링, 방문자 출입관리 ○개별 방, 식당 외의 공용 공간에서 음식물 섭취 자제 ○가능한 1인실 권고, 다인실의 경우 침대간 거리 최소 1m 이상 유지	○(삭제) 방문자 출입관리, 가능한 1인실 권고, 음식물 섭취 자제 ○(수정) 마스크 미착용시 다른 사람과 가능하면 거리 유지(1m)하기